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일학습병행에 대한 부정수급 발생시 지원에 대한 환수 대상, 추가징수 및 추가징수 감면 근거 규정 등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금 환수 주체 및 대상 명확화(안 제16조 제2항 개정)

부정수급액 환수 주체에 법률에 정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반환 대상에 학습기업의 사업주,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외에 사업장 외 교육훈련기관 또는 단체, 인적자원개발협의체도 포함하도록 근거 마련함

나. 일학습병행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기준 근거 마련(안 제16조 제3항 개정)

일학습병행 지원을 받은 대상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 제4항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정수급액 5배 이하의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규정함

다. 추가징수 감면 규정 정비(안 제16조 제4항 개정)

추가징수 감면 사유에 자진신고한 경우 외에도 사소한 부주의·오류, 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징수 감면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목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학습기업의 사업주 또는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가”를 “학습기업의 사업주 또는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등이”로 하고, 후단 “그 환수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해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3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이하 “부정수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학습기업 또는 법 제15조제3항 각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학습기업의 사업주에게 부정수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를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5배 이하의 금액에 관한 추가징수의 기준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6조제4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법 제36조에 따른 지도·점검 전까지 그 부정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추가징수를 받을 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 추가징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 및 환수 등)	제16조(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 및 환수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학습기업의 사업주 또는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그 환수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해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 -----학습기업의 사업주 또는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등이 ----- -----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이하 “부정수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학습기업 또는 법 제15조제3항 각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학습기업의 사업주에게 부정수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5배 이하의 금액에 관한 추가징수의 기준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법 제36조에 따른 지도·점검 전까지 그 부정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신 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추가징수를 받을 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 추가징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연 락 처	(044) 202 - 7273